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5.(목) 12:00 / 배포 2026. 11. 5.(목) 08:30
< 11.6.(금) 조간 >

결혼서비스분야 가격정보 공개 현황 발표 및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

- 중요정보고시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 제시 및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발표 -
- 가격, 위약금 미표시 등 17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-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주병기, 이하 '공정위')는 **예식장업**과 **결혼준비대행업*** 을 영위하는 **총 568개 사업자**를 대상으로 2026년도 **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** 등에 대한 **모니터링**을 **실시**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 또한,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집중점검하여 **17개** 위반 사업자에 대해 **과태료**(총 1,560만원)를 **부과**하였다.

* 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 촬영(스튜디오), 물품대여(드레스), 미용(메이크업) 등 **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**받아 대행하는 업

<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 모니터링>

이번 모니터링은 소위 '깜깜이 계약'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**예식장 418개**와 **결혼준비대행업 150개** 사업장을 방문하여 **가격 등 공개 여부**를 **점검**하고, **중요정보고시***를 **준수**하도록 **독려**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*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,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함 (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표시광고법') 제4조 제1항에 따른 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」)

모니터링 결과 **결혼서비스업**에 대한 **가격정보 공개현황**의 경우, **301개**(예식장 244개, 대행업 57개) 업체가 가격 등 중요정보를 참가격 또는 누리집(홈페이지) 게시를 통해 **공개(53.0%)**하였고, 특히 **참가격 게시** 업체가 1차 모니터링 시 161개에서 **최종 274개로 증가**하였다.

<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의 가격정보 온라인 공개 현황 >

구분	업종	1차 모니터링 결과		2차 모니터링 결과		증감 (%p)
		업체 수	비율	업체 수	비율	
참가격 게시 + 누리집 게시	예식장	141	33.7	244	58.4	+24.7
	결혼준비대행	25	16.7	57	38.0	+21.3
	전체	**166**	**29.2**	**301**	**53.0**	**+23.8**
참가격 게시	예식장	136	32.5	221	52.9	+20.4
	결혼준비대행	25	16.7	53	35.3	+18.6
	전체	**161**	**28.3**	**274**	**48.2**	**+19.9**

다만, 참가격 등 **온라인**에 가격정보를 **공개**하고 있지만 계약서 표지에 표시함에 있어서는 **일부 중요정보**를 **누락**하거나, 계약서 표지 대신 **별도의 설명자료** 등으로 **제공**하는 등 표시의무 이행 과정에서 **절차상 미흡**으로 인해 **불완전 준수**를 하고 있는 업체도 **일부 존재**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 등 법준수 계도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,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**추가 계도**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.

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**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**을 **마련**하고, 제도 **홍보물**(리플렛)을 배포하는 등 **홍보활동을 병행**하였다.

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**수많은 가격** 정보를 **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개**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**누리집 또는 참가격**에서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**쉽게 확인**하고, **다운로드**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또한,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이 **별지 또는 전자기기**를 통해 **열람**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자는 중요정보인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가격 등은 **모두 빠짐없이** 소비자들에게 **공개**하여야 한다.

< 중요정보고시 정보공개 방법 개선안 >

필수	㉮ 사업자 **누리집 또는 참가격**에서 고시의무화된 **중요정보**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, 소비자가 이를 **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게시**(변동이 있을 시 **수시 반영 必**)
1개 선택	㉯ **계약서 표지 내 대표업체*의 서비스**(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) **가격 명시** 후, 각 협력 업체별 모든 서비스의 요금체계 및 환급기준이 담긴 **별지 또는 전자기기**를 통해 **열람**할 수 있도록 안내 * 대표업체: 상담일 기준 직전년도 판매량 상위 10개 업체
	㉰ 대표업체의 서비스 가격 명시조차 어려운 경우, 각 협력 업체별 **모든 서비스**의 **요금체계** 및 환급기준이 담긴 **별지**를 **계약서에 포함**

※ 협력업체 10개 초과로 계약서 표지 내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, 위 정보공개 방법 적용 가능

<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 집중점검>

한편,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568개 사업자 중 **전국 50개 주요 사업자**를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준수여부를 지난 8월부터 **집중점검**하였다.

점검 결과, **17개 사업자**가 기본 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홈페이지(참가격)에 표시하지 않았다. 이에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 하고,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지난 **10월 말 과태료**(총 1,560만원*)를 최종 **부과**하였다.

*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(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)하거나 자진시정(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3] 1. 일반기준, 나., 4))한 경우, 감경한 금액으로 적용

아울러, 공정위는 결혼분야의 가격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결혼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**전담 신고센터**를 **설치·운영**하고 있다. 청년세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분야 사업자가 가격·위약금 미표시 등 법 위반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**공정위 홈페이지("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")**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.

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요정보고시 **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**하여 업체 간 **가격·품질 경쟁**을 **촉진**시키고, **예비부부**들의 **경제적 부담**이 **완화**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

[붙임] 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

담당부서	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황태호 (044-200-4405)
		담당자	조사관	김지윤 (044-200-4413)
	시장감시국 표시광고감시과	책임자	과 장	이영희 (044-200-4569)
		담당자	조사관	김혜연 (044-200-45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**

순번	업체명	업종	소재지	과태료 금액 (만 원)
1	㈜다이렉트컴즈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240
2	㈜케이앤엠코퍼레이션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200
3	㈜마주디렉티드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160
4	제이웨딩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120
5	㈜아이니웨딩네트웍스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100
6	㈜베리굿웨딩컴퍼니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75
7	보타닉파크웨딩	예식장업	서울	60
8	㈜블랑드봄	결혼준비대행업	서울	40
9	㈜바실리움	예식장업	경기	150
10	㈜월드아이	예식장업	경기	100
11	에이케이플라자㈜ 노보텔 수원	예식장업	경기	40
12	㈜소노인터내셔널	예식장업	경기	40
13	리안웨딩	결혼준비대행업	부산	20
14	찰스커뮤니케이션	결혼준비대행업	부산	20
15	㈜오케이웨딩	결혼준비대행업	대구	75
16	(주)블랙라벨	결혼준비대행업	대전	40
17	스카이컨벤션웨딩	예식장업	강원	80
총 합계				1,560

※ 과태료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 시 법원 재판 절차를 거쳐 변동될 수 있음